

성희롱 · 성폭력 없는

서강



서강대학교 양성평등 성상담실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성악사모관 302호
전 화 : 02-705-8074~5 Email : shellen@sogang.ac.kr



서강대학교 양성평등 성상담실

성희롱 · 성폭력 없는

서강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강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강



목차

발간사-성희롱 없는 밝은 캠퍼스가 되기 위하여 · 4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의 정의 · 5

성희롱은 적극적 권리보호의 개념이다 · 6

성희롱의 판단기준 · 7

성희롱의 유형 · 8

성희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아해 · 10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학문화 속의 일상화된 언어적 성희롱 · 12

학생에 대한 교수 성희롱 · 15

동료 교수, 교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 19

교수에 대한 학생 성희롱 · 20

성적 자율권과 데이트 성폭력 · 21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가해 · 24

3.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세와 에티켓 · 25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시다 · 27

양성평등 상상당실 안내 및 이용방법 · 3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절차 및 사건 처리 과정 · 32

부록1 서강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34

부록2 성폭력 피해자 응급 정보 · 39

성희롱 없는 밝은 캠퍼스가 되기 위하여

서강대학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2002년 8월에 27일 「서강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3년 2월 1일 양성평등 성상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저희 양성평등 성상담실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난히 많은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학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수 성폭력 사건들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수 학생 간의 관계에 치명적인 불명예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이 높아지어 예전에는 공론화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공식적인 사건 해결의 창구로 접수되고 처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남녀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지양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성의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강조되는 때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성적 자율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성희롱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것들도 성희롱 행위로 지적될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교수와 학생, 교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바로 알고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학칙에 의한 규제 대상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양성평등 성상담실에서는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초점을 맞춰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정리한 이 예방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이 유익하게 사용되어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성상담실의 상담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대학이 진취적이고 건강한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2월
양성평등 성상담실장

최해림

01_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 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적극적 권리 보호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등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성희롱은 그보다는 가벼운 정도의 성적 언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구분은 행위의 강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럼 성희롱 개념은 직장, 공공단체,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적 폭력을 규제함으로써 기본적인 노동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은 '단체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하게 되는 성차별, 성적 괴롭힘을 예방하여 여성 혹은 남성의 노동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정입니다. 학교 관리자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행위는 해당 단체에서의 징계 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어떤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경험'입니다.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의 의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 행위는 성희롱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에 두고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을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이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위계적인 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 고용, 업무, 교육 등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건형 (혹은 대가형)의 성희롱

성적인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학점이나 그 밖의 평가에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결정, 승진 등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 성적 요구나 행위의 거부가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결정,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대적 환경형의 성희롱

- 업무 또는 학교 환경이 너무 모욕적이고 적대적이어서 개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학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성희롱의 유형에 따른 예

성희롱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식은
성희롱 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입니다.



- ① **육체적 행위**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② **언어적 행위** 말로 하는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모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화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 ③ **시각적 행위**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④ **성적 봉사강요 행위** 성적 대상화하는 여러 행위 등
 - 노래하면서 강제로 볼루스를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 ⑤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이해

× 성희롱은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에 불과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들은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기존중감의 훼손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사제지간, 선후배, 동료 학우들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은 존경과 신뢰감을 파괴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위축과 사회활동의 저하, 학업 성취의 부진 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성희롱은 그냥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참아 넘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미봉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침묵, 회피, 무시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반복되고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나 양성평등 성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피해자가 받은 영향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결과입니다. 행위의 의도나 고의성 여부는 일차적인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성적 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일과 관련된 장소에서 업무 시간에 발생한 일만 성희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화식 자리, 답사, 출장, M.T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만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은 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며 교육, 업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으면,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희롱이라고 여겨지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행동의 중지를 요구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발생한 관계의 조건이나 상황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나 항의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남성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경우 법적인 구제의 대상에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형태이다.

그렇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은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언동은 그 자체로 성희롱은 아니지만 근로와 학습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성에 근거하여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근로환경이나 학습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성차별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0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대학문화 속의 일상화된 언어적 성희롱

일상적인 언어의 사용에서 드러나는 남성우월의식이나 성차별적 인식은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입니다. 특히 강의시간 중에 교수님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공공연하게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신의 성경험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농담 등은 여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수업에서 여학생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학우들 간의 성적 농담이나 무례한 인사 또한 상대방을 불쾌하고 만들어 피해 학우가 공간 자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동아리 등을 탈퇴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성희롱은 불균등한 권력 차이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평등한 성문화, 진취적인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상호존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2003년 2학기 '여성과 폭력'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학내에서 모은 사례와 2003년 10월 27~30일에 여성위원회가 여자화장실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강의실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농담

→ 모 교수가 대부분이 남학생인 수업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있는 여학생에게 바나나가 참 잘 익었다며 남성의 성기를 바나나로 묘사했다. 남학생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수업시간에 바나나를 먹는 행동에 기분이 언짢아서 한 농담이었지만 바나나를 먹고 있던 여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했다.

여성 비하적 단어 사용

→ K교수가 수업 중에 여학생이 떠드는 것을 보고 '야, 이년아! 조용히 해 이년아!' 라는 말을 하였다.

여성이 쉽게 배제되는 상황을 만드는 발언

→ 공대라서 그런지 여학생이 극소수고, 특히나 3~4학년 전공수업은 대부분의 복학생과 몇 안 되는 여학생이 같이 수업 듣는데 거의 여자가 없는 양 무시하였다. 군대식 농담 등을 수업 중에 나누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

노교수님이 중간고사 성적을 이야기 하던 도중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적이 비슷하다고 취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여학생은 남학생들보다 성적도 좋아야겠지만 여자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기 위한 것이다. 여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몸매와 얼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듣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불평등을 느끼게 했다.

성적 대상화

K교수가 수업시간에 문화에 대해 설명하다가 앞에 있는 여학생에게 악수하자고 하고 뽀뽀하자고 하면서 '악수는 할 수 있지만 뽀뽀는 못하는 것이 문화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저 여학생이 나중에 제 방에 와서 '교수님, 저 아까 뽀뽀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할지도' 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M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젊었을 때의 일화를 이야기 하면서 '요즘은 참 성문화가 개방화되었다. 자신도 젊었을 때는 한 인기했다. 여자는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혼할 여자가 아닌 하룻밤의 섹스 상대라면 더더욱 그렇다. 섹스를 할 때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농담을 했다. 오후 수업의 나른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의도였지만 많은 여학생들은 불쾌감을 느꼈다.



동아리 방이나 과방 등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신입생 김 모양은 동아리 방에서 남자선배들과 동기들이 분방하게 성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당황스러웠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자신이 고지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여자친구와의 스킨십 얘기나 영화의 야한 장면 등을 말하며 자신의 표정이나 반응을 즐기는 듯하여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키에 비해 왜소한 체형을 가진 남학생은 여자 선배들이 심심찮게 던지는 '넌 남자가 그래가지고 어디에 써 먹겠니?', '남자는 체력이 생명인데...에이 남자가 그것도 못해?' 등의 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선배들과 마주치기도 싫을 만큼 그런 말들을 듣기가 싫었지만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면 자신을 '조잔한 남자'로 생각할까 걱정이 되어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다.



학생에 대한 교수 성희롱

수직적 사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 사회에서 교수가 학생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물리적 영향력은 매우 큼니다. 특히 교수는 학생의 학점을 관리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며 학생들의 장래 진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접촉이 많고 일방적이고 권력구도 하에서 폐쇄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대학원 과정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더 높습니다.

대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의 구체적인 유형을 인지하여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제 관계와 진취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강의실이나 교수 연구실 등과 같이 학생이 교수로부터 무언가 배우기 위해 찾아간 장소에서 언어나 다른 행동으로 학생을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
- 옥외 교과 활동이나 수업 뒤물이 장소 등에서 학생을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언행을 하는 일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적으로 평가, 비유하여 말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농담으로 특정 신체부위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를 쓰고, 자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교수 성희롱 사례



♀ S대학 J교수는 학생을 학업관련 일로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이야기하다가, 문을 잠근 뒤 학생의 양쪽 귀를 잡고 자신의 볼과 입을 여학생의 볼에 갖다댔고, 입술을 혀로 핥는 등 성추행을 범했습니다. 사건의 조사 과정 중에서 J교수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라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고 J교수는 해임되었습니다.

♀ D대학 K교수는 학회일로 해외에 나가 유학 중이던 제자인 피해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와 술자리 후에 간 노래방에서 강제 키스를 시도하고 포옹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해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서 학문적 성과와 동료교수들의 탄원 등으로 징직 1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어 복직되었지만 몇 년 동안 매학기 해당 전공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 측에 강사대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 B대학 K교수는 학술 세미나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유학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접근해 개인조교로 곁에 두고 6개월에 걸쳐 모두 16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했습니다. 또한 '반항하면 유학갈 때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 고소하면 부도덕한 여자임을 출신 학교에 알려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하겠다, 청부살인 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가해자는 즉각 구속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K교수는 회식 자리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재가 얼굴에 돈을 들여서 많이 좋아졌어. 네가 했던 게 크리스탈 박피 맞지? 재가 크리스탈 박피를 했어'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2차 회식 자리에서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손을 잡고 볼을 꼬집는 행위를 하며 '내가 너네 집에서 너와 네 남편 사이에서 잠을 자겠다', '내가 너를 여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무슨 소리인지 아느냐?', '너한테 키스를 하고 싶다' 등의 성희롱을 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법원에서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후 복직하여 '연구실의 자물쇠를 바꾸겠다'는 등의 보복적 발언을 해 2차 가해로 해임되었다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 교직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된 사고는 자칫 성차별과 여성과 남성의 위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성에 관해서도 남성은 적극적인 유혹자,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사고하면서 상대방의 침묵이나 당황스러워 하는 태도를 동의나 수줍음 등으로 해석하면서 성희롱을 행할 위험이 높게 됩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동등한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도 존칭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동료들 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회식 자리나 야유회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사무실 등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교수에 대한 학생 성희롱

교수나 강사를 상대로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발생 빈도수에 비해 그 정도의 심각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유머나 농담 정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실제로 젊은 여교수나 강사를 상대로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등은 상대방 여교수/강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욕적인 강의와 연구 활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지도와 감독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 의한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하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반권력적 성희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의 성별 위계와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 학생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 권위있는 다른 목격자(예를 들어 남자 교수나 수업조교)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연구실로 불러서 부적절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성평등 성상담실에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합니다.

성적 자율권과 데이트 성폭력

성적 자율권이란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 자율권

캠퍼스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애, 사랑, 성에 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리나 학과 안에서 연애를 하는 커플도 많아지고 예전보다 자유롭게 서로의 연애담이나 성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연애나 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성행위나 성적 관계 맺기의 방식, 성적 편견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남들도 다 해본 경험이니깐 나도 성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호감을 가진 상대의 성적 접촉으로 당황스러워하면서 자신은 준비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로 성행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다른 사람과 달라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적 자율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성적 정체성이나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성적인 삶이 선택의 자유와 결정의 기회가 제약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자신의 행복추구권, 성적 자율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성숙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자세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이란 친밀한 관계, 성적 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관계, 연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혹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

연애에 동의한 것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호감을 표현하였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성적 행위를 시작하려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의 각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거나 성적 관계를 다양하게 맺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관계를 맺으려하거나 정신적 고압 없이 성적 관계만을 요구하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때론 의사소통의 부재로, 또는 잘못된 연애 각본이나 남성중심적 성인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피임법으로 성생활을 시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연애에 대한 기대나 성적 호기심만 가지고 성적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육체 모두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의 사례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시작된 관계에서의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통을 연애 그 자체의 상처와 혼동합니다. '나쁜 남자의 이기적 사랑'으로 상처받은 여성의 이미지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자아 이미지의 손상을 덜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상처와 자기 비난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체념 속에서 폭력을 연애로 받아들이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폭력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입니다.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 원하지 않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입니다.
- 자신의 성행위의 한계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생각하고 피임을 위한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논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관계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숙박업소에 함께 가지 마십시오.
-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에 친구를 초대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만큼만 마십니다.
-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해줘"라는 메시지를 경계합니다. 성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기분과 의사를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합니다.
- 외부와 격리된 장소(비디오방, 노래방 등)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희롱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성희롱의 가해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 사건의 증인들에게 언어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을 통해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증인들이 그러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경우 가해자와 동조자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2003년 7월 K교수가 2차 가해로 징계된 바 있습니다.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에 관해 물어 보거나 중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 '운이 나빴다', '어쩌다 실수한 거다', '잘못 걸렸다'는 말로 가해자의 행동을 가벼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 관한 나쁜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거나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가해자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03_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세와 에티켓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특히 여성과 남성에 따라, 세대 차이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많은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되었다고,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지나 동기보다는 반복 학습된 잘못된 성의식과 성찰없는 관행의 실천이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기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과 성의식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성과 남성, 학생과 직장 부하 등을 동등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성적인 언동에 대해 적극 응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상대방(학생)이 당신과 똑같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 성희롱에 관한 경고, 불평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 상호존중의 교육 분위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십시오.
- 학교의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성희롱은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 ☐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거나 이성을 비하하는 언동을 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성경험을 공공연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 ☐ 상대방의 신상이나 사생활, 성적 관계에 대해 묻는 것을 삼간다.
- ☐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신체접촉(밀착, 포옹, 어깨만지기, 엉
덩이 건드리기 등)을 하지 않는다.
- ☐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
든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 연구실 혹은 수업, 직장 밖에서의 사회교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 공정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여 논문심사를 통과시켜주겠다, 승진시켜주겠다 식의 생각을 갖지
않는다.
- ☐ 비의도적인 무례(성희롱을 포함하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인다.
- ☐ 상대방의 '아니오'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인다.
- ☐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암전히 있거나 별 저항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동의로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하게 물어보고 분
명한 대답을 듣도록 한다.
- ☐ 동료 교수, 교직원 등의 잘못된 언행을 접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잘못을
지적한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시다



“

대부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가해자의 사과, 그리
고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라고 주장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시다.

”

피해를 당했을 때

①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왜곡을 피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
고 차분하게, 그러나 가급적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성희롱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가해자와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의 행동을 육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술하고, 이 행동이 본인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항의 편지는 가급적 사본을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우체국에서 발송 사실을 증명해 주는 동기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한다.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록의 내용은 성희롱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상담실에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교내 상담실(705-8074~5)과 접촉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식적인 해결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면, 사건을 신고하여 학교의 규정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합니다.

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간다.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 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느 순간 자신의 성적 언행으로 인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드러나게 되면 본인 자신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마음과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가해자가 돼버린 상황 속에서 심한 감정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가해자들은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언행을 피해자가 폭력으로 느꼈다면 변명하기 보다는 먼저 피해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즉각적으로 사과하도록 합니다.

많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가해자의 빠른 사과와 반성은 사건으로 인한 여러 사람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자기 정당화,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변명 등은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을 더욱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 습관과 문제의 원인을 성찰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제 3자로서

학과, 동아리의 선후배나 동료들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이 해당 집단 내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 방식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피해자를 믿어주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든다거나 공연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한 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리인은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말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 줌으로써 우선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의논하며,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단일한 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고 사건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돕는 한 편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삶 속에서도 피해자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양성평등 성상담실 안내 및 이용방법

서강대학교 양성평등 성상담실은 남녀평등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교수, 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 모두를 성폭력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2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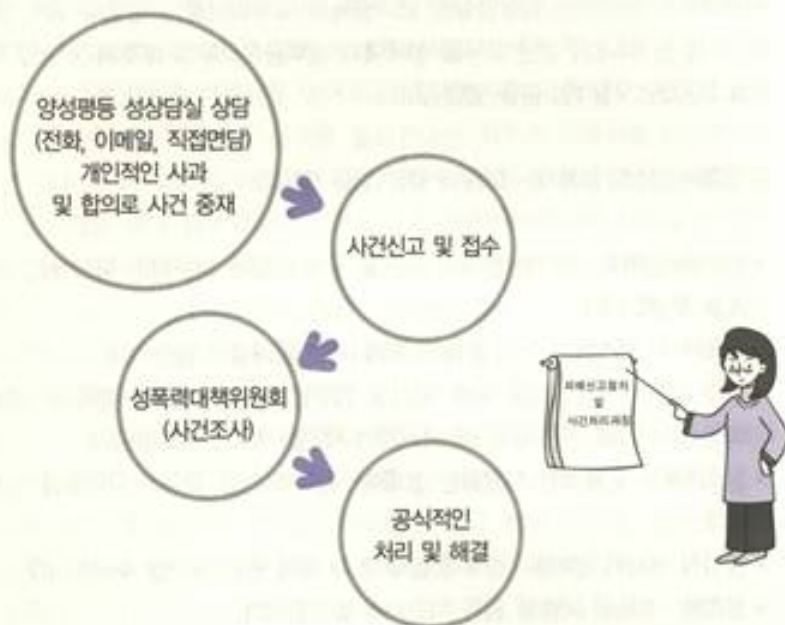
양성평등 성상담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로 고충을 겪는 분들께 전문적인 피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법률적, 의료적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학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사건을 접수받아 '서강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조사·처리합니다.
- 상호존중의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강연회를 실시합니다.
- 성의식 조사와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합니다.
- 일상적인 성적 고민에 대한 상담과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성평등 성상담실은 성이나시오관 302호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전화705-8074~5, Email shelter@sogang.ac.kr로
상담 신청 및 성폭력·성희롱 사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절차 및 사건 처리 과정



① 상담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혹감과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리적인 지지를 얻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 고립감과 자학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상담입니다. 양성평등 성상담실에서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을 치료하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상담실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 의료적·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당사자 개인들의 합의 아래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② 신고 및 접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사건을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사건에 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성폭력대책위원회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서강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증인들의 진술, 사건의 정황, 기타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감구하고 실행합니다.

④ 처리 및 해결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조사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 중재하거나 가해자에 관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가해자의 공개 사과, 가해자 상담 및 재교육 명령, 징계 요청 등을 결정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강대학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강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강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강사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이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함을 전제로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①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는 한 가해자 혹은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양성평등 성상담실

제6조 (설치)

총장은 교내에 양성평등 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 (구성)

-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상담실에는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전문상담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과 기준은 상담실 설치에 관한 세칙에 정한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기록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및 조사 요구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총장은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제10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교목처장, 상담소장, 여성위원 교수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주무부서장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피해자가 교수일 경우 교수 3인,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3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전체 위원들 중 과반수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소위원회는 상담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상담실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⑥ 소위원회 구성은 상담실장, 상담교수, 여성위원자문교수, 학생처장, 여성학 연계 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정한다. 이외 남성교수 2인을 위원으로 정한다. 이때 남성교수는 당연직의 위원들과 구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과, 전공을 고려해 정한다.
- ⑦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담실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⑧ 소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상담실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에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 3 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상담실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신고 방법은 상담실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밖에 여성위원이나 소속장에게 신고 할 수도 있다.

제15조 (심의·의결)

-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제17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7.7)로부터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성폭력 피해자 응급 정보

긴급전화

- 여성긴급전화 ☎ 1366
- 폭력 및 범죄 상담 112
- 여형사기동대 ☎ 02-738-8080

여성폭력 긴급의료 지원센터

- 국립경찰병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 ☎ 02-3400-1114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 구로구 구로6동 142-75 중앙빌딩 3층) ☎ 02-865-411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 (서울 강동구 둔촌2동 6-2) ☎ 02-2225-1111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 02-950-1114
- 박금자 산부인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3-3) ☎ 02-846-1503
-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51) ☎ 031-780-5000

성폭력 상담기관 및 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 02-338-2890
- 서울여성의전화 <http://hotline.jinbo.net>
(서울 중구 산당1동 236-509 을지빌딩 5층) ☎ 02-2272-2161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http://lc.womenlink.or.kr>
(서울 종로구 명동 27-9 동평빌딩 4층) ☎ 02-739-1366
-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jileminist.or.kr>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13번지 101호) ☎ 02-953-1504
-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http://www.gender.or.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6) ☎ 02-3415-0114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http://www.was.or.kr>
(서울 강동구 명일2동 47-1 세종프라자 705호) ☎ 02-3013-1367

성희룡 · 성폭력 없는 서강

발행일 : 2004년 2월

발행인 : 최해림

발행처 : 서강대학교 양성평등 성상담실

기획 : 이지연, 정승화

집필 · 편집 : 정승화

그림 : 정혜운

편집디자인 : 윤정운

제작 : 효일문화사 (전화 2273-4856)